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용노동부

# 고 용 노 동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관련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안내

1. 관련

가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4173, 2020.11.3)

나.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비수도권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조정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545, 2021.2.8)

다.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관련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587, 2021.2.14)

라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(2021.3.26.)

2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**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.5단계**로 **'21.3.29부터 4.11까지 유지**됨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**□ 방역조치 요약**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수도권과 비수도권 방역수칙 사항</th><th rowspan="2">적용시기</th></tr>
<tr><th>수도권(2단계)</th><th>비수도권(1.5단계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직업훈련<br>기관</td><td colspan="2"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, 환기 · 소독</td><td rowspan="2">3. 26.~<br>4. 11.</td></tr>
<tr><td>▶ 음식섭취금지(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<br>▶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br>①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br>②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중단<br><br>* 시설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td><td>▶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</td></tr>
</table>

□ **수도권 및 2단계 적용 지역 관련 안내사항**

○ **(음식섭취)** 수도권 및 2단계 지역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나,

-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시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시 허용

○ **(기숙사 운영)** 숙박시설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운영이 허용('21.4.1～4.11)

① 입소자 (공통) 외출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
- **(입소前)** 2주간 예방관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
- **(입소後)**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·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 · 화장실 등) 소독 강화
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
② 종사자 (공통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

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

3. 한편,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**기본방역수칙**(붙임 참조)이 마련되어 시행되며, 일주일(3.29-4.4)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되며, 계도기간 이후에는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훈련기관 등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처벌,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 수칙(일반, 기숙형) 1부. 끝.

**고용노동부장관**

수신자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,지방관서(직업능력개발부서), 제주특별자치도(고용센터장),고객상담센터소장,한국고용정보원장(능력개발팀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(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)

행정사무관 **진혜숙** 인적자원개발과 과장 **최영범** 전결 2021.4.1.

협조자

시행 인적자원개발과-1144 (2021. 4. 1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323 팩스번호 044-202-8036 / hsjin0601@korea.kr / 비공개(5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